

의안번호	2200614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계번호	24D1012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-희생자의 정의에 ‘연행 및 구금된 사람’을 추가 :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,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	의무규정
2	안 제22조(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)	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(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)	

2. 상세 사유

□ 희생자의 정의 확대(안 제2조)

- 개정안은 희생자의 정의에 ‘연행 및 구금된 사람’을 추가하려는 것임
 - 현행법¹⁾은 ‘희생자’를 제주 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·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²⁾에 따라 제주 4·3

1) 현행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제주4·3사건"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

2. "희생자"란 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3.~5. (생략)

2) 현행법 제5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제주4·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, 이 법에

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함

- 연행·구금되었다가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주 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‘희생자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, 연행·구금되었다가 풀려나는 등의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희생자 수 증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 시점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연행·구금 사실이 있는 사람 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희생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제주4·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제주 4·3사건위원회”라 함)에서 2024년 1월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 수는 14,822명임

□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의무화(안 제22조)

- 현행법³⁾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제주4·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(2431-303)⁴⁾ 및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(2436-300)⁵⁾ 사업으로 제주4·3평화재단 출연, 제주4·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, 제주4·3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(이하 “피해치유사업”이라 함)을 개발·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
- 피해치유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확대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·결정하며,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주4·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2.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3.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- 4.~15. (생략)

③~⑨ (생략)

3) 현행법 제22조(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4) 2024년 161억 2,000만원 편성

5) 2024년 2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, 이 중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(제주)에 2억 4,600만원,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출연금에 6억 3,000만원을 편성하였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